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830호

「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2일

국토교통부 장관

##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(법률 제18355호, 2021. 7. 27 공포) 제5조의2,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'22년 3월 16일부터 '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\*를 반영하여 컨테이너·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

\* 주유소평균판매가, 부가가치세,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(왕복) 운임표 수정(제1호)
- 나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(편도) 운임표 수정(제2호)

-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(환적화물) 삭제(제3호)
- 라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(왕복) 운임표 수정(제4호)
- 마. [별표 3] 부산신항·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,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(왕복) 운임표 수정
- 바.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부터로 변경(부칙)

#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의견과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그 기관, 단체명과 부서명, 직급명), 주소, 전화번호  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630호  
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
-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: 044-201-4018, 4019, 4020(팩스 044-201-5601)

### 4. 기타

-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